

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, '서울안전앱'으로 지켜주세요!



서울특별시

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『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』 제정 발령·시행 알림

1. 관련근거

- 가. 소방기본법 제10조(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)
- 나.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(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)
- 다.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(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)
- 라.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-4016(2018.6.21.)호

2. 『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』 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어 발령·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

- 가. 훈 령 명 : 『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』
- 나. 주요내용 :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과 그 밖의 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
- 다. 시 행 일 : 2018. 6. 27.(수)

3. 비상소화장치가 소방기본법에서 정하는 법정시설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비상소화장치는 함을 비롯한 구성품 모두가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, 기존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소방청 공문 1부.
2. 『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』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서소1-24(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)

담당자 김민수 대응전략팀장 代최종민 재난대응과장 06/26 김학준

협조자

시행 재난대응과-13076 (2018.6.26.) 접수 재난관리과-3825 (2018.6.26.)
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(예장동) / http://fire.seoul.go.kr/
 전화 02-3706-1413 /전송 02-3706-1419 / minsu36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